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 이유

수산물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 ‘원본’ 첨부토록 한 것을 ‘사본’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수산물 품질인증기관 지정 기준,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및 품질인증기관 지정 취소에 따른 벌칙, 연장 신청 서식의 수수료 금액, 수산물 품질인증 등 표시 및 표지도형 기본색상의 변경 등 일부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 ‘원본’ 제출에 따른 민원인의 품질인증서 미소지 기간 발생 방지를 위해 ‘사본’을 제출토록 개정(안 제35조)
- 나. 품질인증기관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조직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식품위생 관련 기관」을 추가하고, 시설 기준의 ‘시·도 단위로 10㎡ 이상’ 규정을 ‘적정하게 운용할 수 있는 면적’으로 변경하고, ‘검정실(檢定室)’과 ‘검정실’을 ‘인증검사실’로 변경하며, 장비 기준의 인증품 계측 및 검사에 필요한 주요 장비 종류를 갖추도록 명시하는 내용으로 개정(안 별표 8)
- 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가중처분 위반행위 적용기간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처분일’에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적용기간 만료시점으로 명확히 하며, 품질인증기관 지정 취소에 해당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등에 대한 처분기준을 추가 및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안 별표 9)

- 라. 민원인 혼선 예방을 위해 수산물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서식
뒷면의 수수료 ‘면제’의 자구 수정(안 별지 제12호)
- 마. 수산물 품질인증 표시 및 표지도형, 지리적표시품 표시 및 표지 도형,
수산물 품질인증서 등록증의 기본색상을 녹색에서 파란색으로 하되,
대상자의 희망 또는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녹색 또는 빨간색
으로 할 수 있도록 색상 관련 조항을 개정(안 별표 7, 안 별표 15, 안 별지
제13호, 안 별지 제32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의견조회, 규제심사, 입법예고(10월~), 법제처 제출(12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중 “원본”을 “사본”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7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 다목의 “녹색”을 “파란색”으로, “파란색”을 “녹색”으로 한다.

1. 표지도형



인증기관명:
인증번호:



Name of Certifying Body:
Certificate Number:

별표 8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직 및 인력

가. 조직

- 1) 품질인증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수산물의 생산조건,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심사·인증을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품질인증 관리부서를 갖춘 법인 또는 단체일 것
-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식품위생 관련 기관

별표 8 제2호의 “시·도 단위로 10m² 이상”을 “적정하게 운용할 수 있는 면적”으로 하고, 같은 호의 “검정실(檢定室)”과 “검정실”을 각각 “인증검사실”로 한다.

2. 시설

품질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 등을 위하여 적정하게 운용할 수 있는 면적의 인증검사실을 설치할 것. 다만, 품질인증의 업무범위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과 협의하여 인증검사실의 수(數)와 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별표 8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장비

가. 인증품의 계측 및 검사에 필요한 장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인증심사 품목 및 제품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장비를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다.

- 1) 식품 일반성분(수분, 회분, 질소화합물, 탄수화물, 지질 등) 검사 장비
- 2) 식품 미량영양성분(무기질, 비타민류 등) 검사 장비
- 3) 미생물 시험(세균수, 세균발육시험, 대장균군, 대장균 등) 장비

나. 인증기관이 인증품에 대한 계측 및 분석을 위탁할 수 있는 시험·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시험·검사기관의 검사 분야는 개별 법령에 따라 지정·공인된 분야로 한다.

-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 2)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9조 또는 제99조에 따라 지정받은 수산물 검사·검정기관

별표 9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 개별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회	2회	3회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업무정지 기간 중 품질인증 업무를 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2호	지정 취소		
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3호	지정 취소		
라. 품질인증기관의 폐업이나 해산·부도로 인하여 품질인증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4호	지정 취소		
마. 법 제17조3항 본문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품질인증 업무를 계속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5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바. 법 제17조제6항의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시정을 명하였으나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6호	지정 취소		
사.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품질인증 업무를 한	법 제18조 제1항제7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경우				
아.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품질인증 업무를 하게 하거나 품질인증기관지정서를 빌려준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8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 취소
자. 품질인증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공중에 위해를 끼치거나 품질인증을 위한 조사 결과를 조작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9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차.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품질인증 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10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별표 15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리적표시품의 표지



별표 15 제2호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표지도형의 색상은 파란색을 기본색상으로 하고,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녹색 또는 빨간색으로 할 수 있다.

별표 15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표시사항

	등록 명칭: (영문등록 명칭) 지리적표시관리기관 명칭, 지리적표시 등록 제 호 생산자(등록법인의 명칭): 주소(전화):
	이 상품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가 보호되는 제품입니다.

	등록 명칭: (영문등록 명칭) 지리적표시관리기관 명칭, 지리적표시 등록 제 호 생산자(등록법인의 명칭): 주소(전화):
이 상품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가 보호되는 제품입니다.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수입인지 붙임란의 “면제”를 “20,000원”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제목 상단의 표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제목 상단의 표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5조(유효기간의 연장신청) ①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의 품 질인증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해당 품질인증을 한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산물 품질인증 (연장)신청서에 품질인 증서 <u>원본</u> 을 첨부하여 그 유효기 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제출하 여야 한다.	제35조(유효기간의 연장신청) ① -- ----- ----- ----- ----- ----- --- <u>사본</u> 을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연 락 처	(044) 200-5487